THE HUE
HANSHIN

괴정 한신더휴 입주자모집공고

-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11.01.(목)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1.01.)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2018년 8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재원에서 실시함)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 노약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에는 59A, 59T, 84A 타입의 유니트가 설치 되어 있으며, 39B, 74, 84B, 84C 타입은 모형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본 아파트는 2015.04.01.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85㎡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청약가점제』 및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제』가 적용되며, 85㎡초과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추첨제』가 적용됩니다.
- ■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2016.08.1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16-1432호에 의거 가점제 40%가 적용됩니다.
- ■ 2017. 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gj-thehue.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권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 • 본 아파트는 2018년 8월 7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2908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의거 최초로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에 따른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2017.01.2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통합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등에 의거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포함되어,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시행사 및 계약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해 총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해당기간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거래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분양계약 체결시, 계약자들에게 별도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2018년 11월 6일(화)	2018년 11월 7일(수)	2018년 11월 8일(목)	2018년 11월 14일(수)	2018년 11월 27일(화) ~ 2018년 11월 29일(목)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t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
장 소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당사 견본주택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2018.5.28.접수분부터 적용)가 실시 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09.18.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과 – 47886호(2018.10.3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216-10 일원(괴정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5~29층 11개동(테라스하우스 지상5층, 4개동 포함) 총835세대(조합분양 297세대, 임대 42세대) 중 일반공급 496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46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6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95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 입주시기 : 2021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대지지분	총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계	일반분양세대수	저층우선배정세대수
민영주택	2018001151-01	39.9852B	39B	39.9852	22.4205	62.4057	25.7608	88.1665	22.4031	33	3	3	6	–	12	21	2
	2018001151-02	59.9476A	59A	59.9476	24.5387	84.4863	38.6217	123.1080	33.5877	216	21	21	43	6	91	125	9
	2018001151-03	59.7929T	59T	59.7929	36.3724	96.1653	38.5221	134.6874	33.5011	63	6	6	12	1	25	38	14
	2018001151-04	74.9959	74	74.9959	28.8388	103.8347	48.3167	152.1514	42.0191	54	5	5	10	1	21	33	2
	2018001151-05	84.8570A	84A	84.8570	27.5137	112.3707	54.6701	167.0408	47.5441	83	8	8	16	2	34	49	2
	2018001151-06	84.9396B	84B	84.9396	28.1055	113.0451	54.7233	167.7684	47.5904	38	3	3	7	1	14	24	–
	2018001151-07	84.9768C	84C	84.9768	27.0034	111.9802	54.7471	166.7273	47.6112	9	–	–	1	–	1	8	–
	합 계									496	46	46	95	11	198	298	29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주택형	동(라인)	층	해당세대수	분양금액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10%) 1차 계약시	2차 2018.12.28	중도금(60%) 1차(10%) 2019.07.01	2차(10%) 2019.11.29	3차(10%) 2020.04.29	4차(10%) 2020.09.29	5차(10%) 2021.03.02	6차(10%) 2021.07.29	잔금(30%) 입주지정일
39.9852B	107동 1,4호	2층	2	79,007,236	136,992,764	216,000,000	10,000,000	11,6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64,800,000
		3~4층	4	79,007,236	141,992,764	221,000,000	10,000,000	12,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66,300,000
		5~9층	10	79,007,236	145,992,764	225,000,000	10,000,000	1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67,500,000
		10~19층	17	79,007,236	150,992,764	230,000,000	10,000,000	1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69,000,000
59.9476A	101동 1,3,4호 105동 1~4호 106동 1,2,4호	2층	9	118,451,077	192,548,923	311,000,000	10,000,000	2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93,300,000
		3~4층	16	118,451,077	199,548,923	318,000,000	10,000,000	2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95,400,000
		5~9층	40	118,451,077	206,548,923	325,000,000	10,000,000	2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97,500,000
		10~20층	90	118,451,077	213,548,923	332,000,000	10,000,000	23,200,000	33,200,000	33,200,000	33,200,000	33,200,000	33,200,000	33,200,000	99,600,000
		21~29층	61	118,451,077	220,548,923	339,000,000	10,000,000	2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101,700,000
59.7929T	108동 1~4호 109동 1~4호 110동 1~4호 111동 1~2호	1층	13	118,145,672	199,854,328	318,000,000	10,000,000	2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95,400,000
		2층	13	118,145,672	206,854,328	325,000,000	10,000,000	2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97,500,000
		3층	13	118,145,672	213,854,328	332,000,000	10,000,000	23,200,000	33,200,000	33,200,000	33,200,000	33,200,000	33,200,000	33,200,000	99,600,000
		4층	14	118,145,672	220,854,328	339,000,000	10,000,000	2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101,700,000
		5층	10	118,145,672	227,854,328	346,000,000	10,000,000	2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103,800,000
74.9959	101동 2호 106동 3호	2층	2	148,185,427	225,814,573	374,000,000	10,000,000	2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112,200,000
		3~4층	4	148,185,427	233,814,573	382,000,000	10,000,000	2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114,600,000
		5~9층	10	148,185,427	241,814,573	390,000,000	10,000,000	2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117,000,000
		10~20층	21	148,185,427	249,814,573	398,000,000	10,000,000	2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119,400,000
		21~29층	17	148,185,427	258,814,573	407,000,000	10,000,000	3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122,100,000
84.8570A	102동 1~4호 103동 1~2호 104동 1~4호	2층	2	167,670,007	246,329,993	414,000,000	10,000,000	3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124,200,000
		3~4층	10	167,670,007	255,329,993	423,000,000	10,000,000	3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126,900,000
		5~9층	14	167,670,007	264,329,993	432,000,000	10,000,000	3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129,600,000
		10~20층	38	167,670,007	273,329,993	441,000,000	10,000,000	3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132,300,000
		21~29층	19	167,670,007	282,329,993	450,000,000	10,000,000	3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135,000,000
84.9396B	103동 3~4호	3~4층	3	167,833,289	248,166,711	416,000,000	10,000,000	3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124,800,000
		5~9층	8	167,833,289	257,166,711	425,000,000	10,000,000	3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127,500,000
		10~20층	18	167,833,289	266,166,711	434,000,000	10,000,000	3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130,200,000
		21~29층	9	167,833,289	275,166,711	443,000,000	10,000,000	3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132,900,000
84.9768C	103동 5호	5~9층	3	167,906,643	264,093,357	432,000,000	10,000,000	3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129,600,000
		10~20층	4	167,906,643	273,093,357	441,000,000	10,000,000	3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132,300,000
		21~29층	2	167,906,643	282,093,357	450,000,000	10,000,000	3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135,000,000

■ 공통사항

• 2009. 4.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 표시 안내

(단위 : ㎡)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39.9852B	59.9476A	59.7929T	74.9959	84.8570A	84.9396B	84.9768C
약식표기	39B	59A	59T	74	84A	84B	84C

구분	39A	39B	59A	59T	74	84A	84B	84C	합계
일반분양	–	33	216	63	54	83	38	9	496
조합	–	3	52	6	2	197	18	19	297
임대	42	–	–	–	–	–	–	–	42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세대별로 공급금액이 상이하오니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임.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함.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임.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선납할인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선납할인율은 공급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불가)
-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39B	59A	59T	74	84A	84B	84C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6	1	1	2	–	–	11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청약통장)		–	5	1	2	2	1	–	11
	중소기업 근로자		1	5	2	1	2	1	–	12
	장애인		1	5	2	1	2	1	–	1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3	21	6	5	8	3	–	46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5	33	9	8	12	6	1	74
		일반공급(25%)	1	10	3	2	4	1	–	2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6	1	1	2	1	–	11
합 계			12	91	25	21	34	14	1	19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 용
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은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46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등(부산지방보훈청), 장애인(부산시 장애인복지과)	청약통장 필요없음
10년이상복무군인(국군복지단), 중소기업근로자(부산중소기업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4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부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 준	점수	비 고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이내) : 9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자(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 분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002,590원	5,846,903원	6,220,005원	6,625,810원	7,031,615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003,108원	7,016,284원	7,464,006원	7,950,972원	8,437,938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002,591원 ~ 6,003,108원	5,846,904원 ~ 7,016,284원	6,220,006원 ~ 7,464,006원	6,625,811원 ~ 7,950,972원	7,031,616원 ~ 8,437,938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003,109원 ~ 6,503,367원	7,016,285원 ~ 7,600,974원	7,464,007원 ~ 8,086,007원	7,950,973원 ~ 8,613,553원	8,437,939원 ~ 9,141,100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05,805)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①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②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포함)]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11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조 제2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더라도 청약이 가능함. • 부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거주자에게 공급함.
청약신청 유의사항	• 청약전 반드시 아파트 투유(www.apt2you.com)에서 과거당첨사실 조회요망.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으로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 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 폐지(2017.04.03. 이후 모집공고 분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가능함.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내 용	비고
민영주택	1순위	• 85㎡이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함.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람.(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가점제(40%) + 추첨제(60%)
	2순위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	추첨제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 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5㎡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분	신 청 자 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가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후 부양가족수 산정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총점	84	–				
비고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 건축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로 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인이 되어 있는 날
-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공시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청약신청자는(배우자 포함)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소형·저가주택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기준
    1) 60㎡ 이하이며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수도권 외는 8천만원 이하인 주택(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함)
- • 주택공시가격 확인방법
  -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중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에 따름.
  - 주택을 처분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을 따름.
  - 주택이 멸실, 증개축된 경우 :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종전 주택의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주택가격을 적용.
  ※ 주택공시가격 공시 : 공동주택은 2006년, 단독주택 등은 2005년부터 공시됨(개별공시지가는 1990년부터 공시됨)

4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청약전 반드시 과거 당첨사실 조회 요망
- 아파트 투유(www.apt2you.com)에서 과거당첨사실 조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 비속(단, 만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제외)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18.11.06(화) (APT2you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APT2you)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 사업주체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018.11.07.(수)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모바일)	• 금융결제원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2순위	2018.11.08.(목) 08:00~17:30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청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접수 장소에 비치 /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증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www.apt2you.com)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견본주택에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만19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만30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1.0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접수장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PC 청약시]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 「주택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 1순위 및 2순위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 ~ 16:00)

구분		구 비 사 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당첨자 서류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 진행이 불가함)

구분	당첨자 서류 제출기간	서류제출 장소
정당 당첨자(특별공급 / 일반공급)	2018.11.19.(월) ~ 2018.11.23.(금), 5일간 (10:00 ~ 16: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340-1)

-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1.0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함.
-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함. • 소명자료 제출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임.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 후 일괄 파기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됨.(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5 당첨자 발표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일시 : 2018.11.14.(수) •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또는 APT2you 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18.11.27.(화)~2018.11.29.(목)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340-1)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gj-thehue.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8.11.14 (수) ~ 2018.11.23 (금) (10일간)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조회」 ⇒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전화(ARS)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서비스 종료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특별공급 제외)	
	제공일시	2018.11.14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서비스는 2017.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공급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신청자가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 모두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 당첨자는 무효처리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

6 계약체결

■ 계약절차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1차 계약금 계좌로 1차 계약금 납부하고 계약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계약체결	계약체결 장소
정당 당첨자(일반공급 / 특별공급)	2018.11.27.(화) ~ 2018.11.29.(목) (10:00 ~ 16: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340-1)

-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1,2순위 당첨자)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취소됨.
- • 아래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 체결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		계약금 입금증(납부영수증)	–	• 계약금 현장 수납 불가함
	○		당첨자의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당첨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제3자 대리계약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표상 거주 기간 확인이 불가할 경우(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직계 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복무확인서 및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위임장	계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1.0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 계약기간(정당 당첨자) : 2018.11.27.(화) ~ 2018.11.29.(목), 3일간(10:00 ~ 16:00)
- • 계약장소 : 당사 견본주택(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340-1) • 계약금 납부 :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 • 정당 당첨자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당첨효력이 상실됨.
-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 당첨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 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수협은행	1010-1224-7818	괴정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한신공영(주)

■ 계약관련 유의사항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 당첨이 제한됨)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임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관계 법령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 사업주체는 동 법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 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되,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같은 순위(제27조,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향후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금융권의 대출 부적격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음.
- • 중도금 대출 약정기간은 당사(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대출이자는 당사가 대납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입주예정일 : 2021년 12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7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마이너스 옵션

1.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 계약시(10%)	잔금 입주지정일(90%)
59A	6,200,000	620,000	5,580,000
59T	8,200,000	820,000	7,380,000
74	9,500,000	950,000	8,550,000
84A	12,000,000	1,200,000	10,800,000
84B	10,600,000	1,060,000	9,540,000
84C	10,800,000	1,080,000	9,72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빌트인 전기오븐 및 현관중문등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음.(발코니 비확장시 전기오븐 미제공 및 현관중문 미설치)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	국민은행	456701-01-118087	한신공영(주)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납부 계좌와 다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또한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비확장형 선택시 외부 샤시 비용은 별도 부담임.(또는 미설치됨)
-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발코니 확장계약 관련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헤드,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등으로 예방하여야 함.
- • 인접 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부과될 수 있음.
-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함.(※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
-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기본 선택품목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기본 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입주자가 발코니확장 및 기본 선택품목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기본 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시행사(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해 천장돌출, 우물천정 디자인 변경,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 함.
-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차에 의한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2. 무상선택 옵션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옵션	침실1과 침실2 가변형 벽체	74, 84A, 84C	침실 분리형 또는 통합형 선택
	침실1과 알파룸 가변형 벽체	84B	

3.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품목	제품명	옵션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업체명
가전기기	전타입	가스 하이브리드 쿡탑(가스1구+하이2구)	RBR-HG300	600,000	60,000	540,000	린나이
		빌트인 냉장고	S711SI24B	5,400,000	540,000	4,860,000	LG전자

■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 추가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서, 계약주체는 본 사업의 시공사인 한신공영(주)이며,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함.
-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임.
-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해약은 공사의 착수시점 이후 불가함.
-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 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가격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유상옵션 납부계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유상옵션(계약금, 잔금)	국민은행	456701-01-118087	한신공영(주)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납부 계좌와 다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또한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4. 시스템에어컨

■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공사비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옵션선택		에이컨 설치 적용실 (실내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업체명
39B	옵션1	2개소	거실+안방	3,200,000	320,000	2,880,000	LG전자
59A	옵션1	2개소	거실+안방	3,200,000	320,000	2,880,000	
	옵션2	4개소	거실+안방+침실1+침실2	5,200,000	520,000	4,680,000	
59T	옵션1	2개소	거실+안방	3,200,000	320,000	2,880,000	
	옵션2	3개소	거실+안방+침실1	4,200,000	420,000	3,780,000	
74	옵션1	3개소	거실+주방+안방	4,300,000	430,000	3,870,000	
	옵션2	5개소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6,200,000	620,000	5,580,000	
84A	옵션1	3개소	거실+주방+안방	4,500,000	450,000	4,050,000	
	옵션2	5개소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6,400,000	640,000	5,760,000	
	옵션3	6개소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8,000,000	800,000	7,200,000	
84B	옵션1	3개소	거실+주방+안방	4,500,000	450,000	4,050,000	
	옵션2	5개소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6,400,000	640,000	5,760,000	
	옵션3	6개소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7,800,000	780,000	7,020,000	
84C	옵션1	3개소	거실+주방+안방	4,500,000	450,000	4,050,000	
	옵션2	5개소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6,400,000	640,000	5,760,000	
	옵션3	6개소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8,000,000	800,000	7,200,000	

■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비 납부계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계약금, 잔금)	국민은행	456701-01-118087	한신공영(주)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납부 계좌와 다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또한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계약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계약전 위치 확인 요망)
- 시스템 에어컨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및 안방(벽걸이형)으로 총 2개소에 설치 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기본 제공되는 매립 냉매배관[거실, 안방]은 설치되지 않으며, 상기 시스템에어컨 설치금액은 매립 냉매배관[거실, 안방]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선택세대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옵션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음

5.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주방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신청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자재 품목과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제공품목
문	목재문(문틀 및 문짝 도어레버, 경첩, 문선), ABS문(문틀 및 문짝, 도어레버, 경첩, 문선)	발코니 내부 PL 창호, 세대 현관 방화문 및 도어록
바닥	바닥재(마루, 현관바닥 및 디딤판 현관석), 걸레받이, 발코니 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바닥난방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 타일, 발코니벽 도장, 신발장, 복도 수납장, 화장대(상판 및 거울포함), 드레스룸(도어 및 시스템 선반 포함), 반침장 등 가구일체, 재료분리대(욕실포함)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천장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인테리어 마감, 발코니 천장 도장, 전동빨래건조대	천장틀 위 석고보드 마감
욕실	천장, 타일(바닥, 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수전 및 헤드수전 등), 샤워부스, 욕실 악세서리 일체, 욕실장, 바닥 배수구 커버, 욕실 환풍기, 욕실 스피커폰	액체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개배관 및 배선
주방가구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펜트리장(도어 및 시스템선반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가스쿡탑, 렌지후드, 주방액정TV 등 가전기기 일체	소방검사 관련 후드, 주방 배기덕트
조명기구	부착, 매립, 거치형 조명기구(간접조명 포함), 욕실 매입등	배선기구류(스위치, 콘센트)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품목 등은 견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함.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39B	59A	59T	74	84A	84B	84C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금액	15,295,000	20,783,000	22,935,000	25,278,000	27,356,000	27,520,000	27,261,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개시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셔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부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마이너스 옵션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감소분을 분양대금 납부 비율에 안분하여 차감 적용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별도품목 시공)가 불가함.(마이너스 옵션 신청 이후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오수드레인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사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향후 계약자가 별도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할 경우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입주자가 가변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공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 바탕처리가 없음.

8 기 타

▣ 유의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확인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기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어린이집), 독서실,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실 등), 주민공동시설 등

■ 견본주택

- • 견본주택은 59㎡A, 59㎡T, 84㎡A 형이 확장형 세대로 설치되어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품목, 유상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있으며,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유상옵션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소품(전시품목 등) 및 주방 또는 가전제품의 사용공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 시 동질 또는 동등의 제품으로 시공됨.
-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책상, 식탁, 전시조명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 각종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시공될 마감재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견본주택의 단지모형은 아파트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비확장형 선택시 아파트 외관이 달라질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수, 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세대로 시공되어 있으며, 비확장형세대 선택 시 확장형세대와는 다르게 공간구성이 상이하고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마감재, 제공품목 등)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타일, 석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단차, 코너, 마감재, 접합부, 패턴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 창호는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사양, 분할형태, 열림(개폐)방향, 유리, 창호철물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책상, 책장 등), 생활가전류(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 침장 및 커튼, 기타 인테리어 소품 등은 연출용으로써 계약시 제공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바람. • 세대 내부 타일 시공부위의 타일 나누기 및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 견본주택에 설치된 급/배기 디퓨져,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 점검구의 제품사양과 위치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59㎡T 형의 경우 본 시공 시 테라스의 선형, 세대간 경계벽의 높이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인허가 및 본 시공의 여건, 성능/기능/입면개선, 풍동시험 결과 등에 따라 프레임 및 유리의 두께와 종류, 색상, 크기, 개구부 위치, 규격, 재질, 형태, 창호분할 등이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본 시공 시의 조명과 견본주택 내부 연출을 위한 조명(스포트라이트, 스탠드조명 및 팬던트)이 혼재되어 있으며, 본 시공 시 인·허가도서 기준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본 시공 시 소방법령에 따라 설치 예정이며, 본 시공 시 상기사항의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정, 커튼박스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유상옵션품목과 디스플레이를 위한 연출용 소품 및 소품가구가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제공품목은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 84㎡A형 세대는 침실 가변형 벽체 미설치 타입(확장시 선택형)으로 건립되었으며, 본 시공 시 확장형의 기본은 침실1, 침실2 분리형 침실로 시공됨.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모형, 인쇄물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람.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 세대 간 경계벽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4호, 2015.11.25.) 제3조 성능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며, 입주 후 세대 간 벽체에 소음원을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으로 인한 소음민원을 시행사 및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음. • 가변형벽체는 이동식이 아닌 건식고정벽체로써, 조적벽이나 콘크리트벽보다 방음효과가 떨어지므로 실별로 다소 소음이 전달될 수 있고, 벽걸이형TV, 선반, 기타중량물을 설치할 경우 입주자의 별도 보강재 설치가 필요할 수 있음.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정고는 본 공사 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 내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선택사항 및 유상옵션품목 설치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확장세대의 경우, 평면에 따라 조명기구 수량이 차이가 날 수 있음 • 본 단지의 난방방식은 도시가스 개별난방으로 세대별 보일러가 설치되며, 발코니에는 도시가스 배관 및 계량기가 설치되고,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별도의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 테라스(59T)형 단위세대의 경우 테라스의 끝부분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되며, 테라스 출입을 위한 침실 및 발코니창호에 별도의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음.
- • 외벽 및 세대 간 벽 등 단열설치 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음.
-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지하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타입별 서비스면적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시공 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서비스면적은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외부창호의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와 외장재 등은 제조사 및 입면계획 등에 따라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욕실에 설치되는 세면대, 좌변기, 욕조, 수전 등의 제품은 견본주택에 설치 또는 분양자료에 표현된 제품을 기준으로 하되 서로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의 기준을 우선함. •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신발의 높이와 상관없음. (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싱크대하부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고 노출온수파이프에 별도의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 • 본 공사 시 천정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정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타일 줄눈위치, 액세서리 위치는 형별, 타입별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가구류(붙박이장, 고정가구, 주방가구, 신발장, 화장대, 욕실장 등) 시공에 따라 안 보이는 벽체, 바닥, 천정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상부장의 깊이가 다를 수 있음.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방가구 및 고정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음.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 및 가구 등의 용량이나 규격에 따라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계약 및 입주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 및 보조주방의 경우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으로써, 세대별 급배기를 위한 세대환기설비가 세탁실 상부,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천장에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임.
- • 단위세대 중 39B, 59A, 74, 84A, 84B, 84C 형은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계획하여 대피공간 내부에 비상피난을 위한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39A형은 전층에, 59T형은 4층 이상의 세대부터 인접세대 연결통로가 설치될 예정임.(단, 필로티나 부대복리시설 등의 윗세대 및 1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 제외)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 위치와 개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각종 설비배관의 노출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수전위치, 바닥레벨, 단차부위, 천장마감, 전열교환기, 수전, 전기스위치 콘센트 등은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세대내 실외기, 우수/오수(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천연자재(무늬목, 천연석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에 대한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따르며, 견본주택 또는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내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본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내 내부 커튼박스의 규격, 타일시공부위의 줄눈나누기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후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세대내부에 부분적으로 도배가 진행될 경우 시공시차에 따른 도배지의 색상, 질감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유상옵션품목 및 선택옵션품목에 대한 선택은 확장형세대 선택 시에만 선택 가능함. •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욕실 천장, 주방천정 또는 주방가구 내부 등에 설치됨.
- • 세대 내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통신함이 신발장 후면 및 현관창고 내부 벽면에 설치되어 수납에 일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분전함이 침실 내부 벽면에 설치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의 단위세대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호는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사양, 색상 개폐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테라스세대(59T)의 경우 테라스로 출입하는 창호에 별도의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천연석의 자연스러운 패턴은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며, 본 시공 시 석재마다 차이가 날 수 있음. • 단위세대에 설치되는 석재(현관, 욕실, 화장대)는 분할하여 시공되며, 연결부위는 코킹 처리하여 마감 될 수 있음. • 미건립세대 마감사양 및 색상은 건립세대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바람.
- • 미건립세대 중 39B형 마감사양 기준은 59형 기준으로 시공되며, 주방벽 타일 및 주방상판은 같은 사양으로써 타일 패턴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사오니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 미건립세대 중 74형 마감사양 기준은 59타입 기준으로 시공되며, 침실 가변형 벽체 미설치 선택 시(개방형 침실) 벽체는 59A 세대 침실 1벽지 및 포인트 벽지로 시공됨
- • 가변형 벽체 선택형은 74형, 84형 확장 시에만 적용되며, 가구위치 및 입면 디자인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바람
- • 각종 광고 및 홍보물,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 세대내 현관중문은 확장 시 제공품목으로써, 본 시공 시 중문의 형태 및 사양,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각 형별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벽체와의 틈새 및 흔들림, 이격이 있을 수 있음.
- • 주방싱크대 하부에 분배기가 설치되며, 별도의 커버마감은 없으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59A 보일러실 및 74형, 84형 주방 발코니 도어는 PD(유리 미설치)로 설치됨.
- • 단위세대 가구류, 빌트인가전류 등은 확장 또는 비확장 여부에 따라 설치위치, 수량, 디자인, 제공품목 등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내부여건

-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은 단지 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상가동 건물, 옹벽구조물, 기타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일부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필로티공간은 동별출입구, 보행로, 차량통행로, 자전거보관대 설치, 그 밖의 공용공간 등으로 활용되어 인접세대에 소음, 빛공해 등으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해당내용을 확인 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내에 설치되는 경사로(차량용, 보행용, 산책용 등)는 동절기에 미끄럼이 발생할 수 있음.
- •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 본 단지는 미술작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작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미술작품은 관련 법령과 심의절차를 거쳐 제작 및 설치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허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이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 단지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공급 시와 입주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주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형적 요인으로 인해 단지 내부 및 외부에 옹벽, 자연석쌓기 구간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내 또는 단지경계부분의 옹벽, 자연석쌓기, 경사면 또는 외부계단의 높이와 구간, 선형 등은 인접한 도시계획도로 및 아파트단지 공사과정 중에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 및 조경특화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 단지 내 조경 식재 구간 중 동의 일부구간은 소방법상 비상 시 공기안전매트 설치를 위해 식재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저층 세대는 사생활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주택(아파트)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함 (주차장 제외).
-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써 공동주택과 별도의 대지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단지 내에 공동주택(아파트)은 지하주차장이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지상주차장이 설치됨.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단지 외부와의 레벨차로 인하여 옹벽 또는 조경석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저층부의 조망권, 일조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주변도로, 단지내차로 및 비상차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단지 주·부출입구, 필로티, 보행로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빛 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동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단지 주·부출입구 인근에 위치하는 세대는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장, 문주 등의 설치로 인해 조망권, 일조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101동 북측으로 가스정압실이 설치될 예정임. • 102동, 103동, 105동의 옥상과 지하에 옥외안테나와 중계장치 등 이동통신중계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105동 상부에 소화용 고가수조가 설치될 예정임.
- • 108동·109동·110동·111동 옥탑과 어린이집(보육시설) 인근에 위치한 세대는 옥탑과 어린이집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 주동 저층부 마감디자인, 주동 외벽마감 및 옥탑 디자인 등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 변경될 수 있음. (별도 경관 및 색채심의 등 관련 인허가 결과에 따름)
- • 주동 저층부 마감디자인은 당사의 디자인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외벽마감 및 옥탑 디자인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 변경될 수 있음. (별도 경관 및 색채심의 등 관련 인허가 결과에 따름)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등은 향후 상위계획(지침)의 변경, 심의 또는 인허가 과정 중에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 지하주차장의 천장은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있고, 각 동별 여건에 따라 지하주차장의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의 각 동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생길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의 서측 도로변의 부대복리시설동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대복리시설동의 2층~5층은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음. • 부대복리시설동의 1층부분 외부에 설치된 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주차장이므로 공동주택의 입주민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함.
- • 본 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은104동 1층에 경로당, 105동의 지하1층에 관리사무소, 부대복리시설동의 2층에 작은도서관과 독서실, 3층에 휘트니스, GX룸, 4층에 탈의/샤워실, 휴게공간, 5층에 골프연습실, 입주자회의실, 휴게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보육시설은 104동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대복리시설동의 최상부에 위치하고 있음.
- • 부대복리시설동은 공동주택의 주차장(지하주차장)에서 직접 진입할 수 없으므로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부대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동일 면적 내에서 해당 용도의 구성 및 실 구획, 실면적 등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보육시설, 경로당은 주방가구를 제외한 내부시설물, 비품,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 단지 내 부대시설 내 설치되는 각종 가구, 기구, 비품류 등의 종류, 개수, 색채 및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 하여야 함.
- • 피트니스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業])으로 운영할 수 없음. • 경로당 운영주체는 준공 사용검사 후 해당읍·면(동)사무소에 경로당 등록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 • 어린이집 운영주체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 • 총 주차대수는 903대로서, 근린생활시설 주차는 부대복리시설동에 지상주차 5대, 공동주택 주차는 지하주차장에 898대가 설치되며, 주차구획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시 지하주차장 기둥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이용시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아 일부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층 특성상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의 천장은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됨. • 지하주차장과 통합으로 설치되는 발전기실, 기계실, 전기실, 펌프실에 인접한 경우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지하층 기계실, 발전기실, 펌프실 등 설비공간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지상에 노출된 환기 시설물은 건축물의 특성상 필요한 시설로서 향후 환경개선을 위하여 형태와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층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팬룸이 설치되며 팬룸 상부(옥외공간)에 환기탑(DA)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시 소음·먼지·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일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하여 에어매트 설치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해당 자리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불가능함.
-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조경계획은 사업계획승인 시의 도서내용을 충족하여 식재하되 그 식재위치는 식재의 생육환경과 형태, 크기 등에 따라 다소 조정되어 배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커뮤니티,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실외기는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될 수 있음. 또한 해당 계획은 공사 시 필요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개소는 인·허가도서 기준으로 시공되고, 본 공사 시 위치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쓰레기분리수거시설(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의 인근에 위치하는 일부 세대는 악취, 해충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 일부 동의 경우 인근에 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및 주민복리시설(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작은도서관) 등이 계획되어 있어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등의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등)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 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지붕에는 에어컨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어 근린생활시설의 인근에 위치하는 일부 동은 그에 따른 저층부 일조, 조망 및 소음 등의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내부구획은 향후 근린생활시설 분양 시 M.D계획을 통해 변경 될 수 있으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향후 영업행위 및 시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분양전까지 사업시행자의 소유이므로 그 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 • 근린생활시설 주변의 바닥레벨은 본 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단지 내부에 상가용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며, 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주동의 피로티 공간은 보행통로 또는 공용부분으로 개인이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적이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등의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함.
- • 각 세대의 내부에 설치되는 주방가구(상,하부장), 신발장, 화장대, 붙박이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상하부, 측후면 등 비노출면에는 마루, 타일, 도배지 등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 대지면적은 아래와 같음

구분	사업대지면적	기부체납면적 공공공지	도로	정비기반시설	소계	비고
대지면적(㎡)	33,015.0000㎡	2,377.0000㎡	6,212.0000㎡	5,584.0000㎡	14,173.000㎡	

■ 테라스관련 유의사항

- • 본 공동주택은 일부세대(59㎡T)에 테라스를 제공하며 해당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한 공간으로서, 대지지분·주택공급면적·기타공유면적 등과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전용하여 사용가능한 공간이므로 계약전 이에 대한 관련도서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테라스는 공용공간으로서 사적 소유물은 아니나 개별세대를 거쳐 진입해야 하고, 세대의 프라이버시 및 방범의 이유로 공공의 관리 목적이 아닌 사적사유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람. 사적인 이유로 진입을 시도하는 것은 무단주거침입이 될 수 있음에 대해 '괴정 한신더휴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함. 단, 공공의 관리 목적으로 관리자가 출입할 수 있으니 점검 통보시 이를 거부한다거나 출입 및 점검을 방해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에서 일부세대(59㎡T)에 테라스로 표기된 부분은 건축물의 구조, 단지의 경관 등 설계상 불가피하게 생기는 공용공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세대 계약자는 타 계약자를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위 테라스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나, 공용설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진입요구 시 반드시 이를 개방하여야 하고, 해당 테라스 부분에 대하여는 등기를 포함한 일체의 개별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며, 테라스가 제공되지 않는 일반형 주택형(39A,39B,59A,74,84A,84B,84C타입, 766세대)세대 계약자는 테라스가 제공된 세대에서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별도의 재산권 행사는 불가)를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공용부분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의 결의로서 제정한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각 층 테라스에서의 외부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니 유아, 노약자 등 주위가 필요한 입주자의 난간 접근차단 등 추락방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아래층 또는 인근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층 테라스에서의 활동으로 인한 인접세대의 사생활침해 또는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 테라스 진출입 시 실내외부의 단 차이 및 빗물침투방지를 위한 창문의 턱에 발이 걸리거나 부주의에 의한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념하시기 바람.
- • 테라스의 크기 및 차양의 길이는 층별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테라스의 선형, 세대간 경계벽의 높이는 본 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각 층의 테라스는 외부에 노출된 공간으로 인접한 세대 등에 의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테라스 바닥은 타일 마감이며, 바닥 레벨은 공사 시 바닥물매를 반영하여 시공됨.

■ 단지외부여건

- • 본 단지 인근으로 괴정초등학교와 동주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의 북동측으로 구덕산의 능선이 이어지고 있음. • 본 단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 본 단지는 괴정2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주체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범위 내에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개설구간, 공공공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옹벽 설치 등으로 인하여 일부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단지 인근의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과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광고, 홍보물 관련

- •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세대모형 등),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입체도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 등을 확인하여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써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 각종 인쇄물의 세대내 가구 및 각종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으며,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본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위세대 평면도, 조감도 등은 세대 내·외부에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집기류, 시설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설치되는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인해 변경될 수 있사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 함.
- •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본 홍보물에 사용된 투상도 및 모형에 표현된 드레스룸, 주방발코니 창호높이는 위치에 따라 상이하오니 계약 시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람.
- • 본 카다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람.

■ 기타 유의사항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 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환산방법 : 형별면적(㎡) X 0.3025 또는 형별면적(㎡)/3.3058]
- • 2009. 4.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분양 계약 체결 시 입주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연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근린상가의 각 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음. • 세대별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끝자리수 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하고,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그 밖의 기타공유면적의 경우 단지의 환경이나 경관 등의 향상을 위하여 다소 증가할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타사 또는 당사 타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계획 등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본 아파트의 견본주택 및 인·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위탁자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인수/인계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 • 설계도면에 반영된 공용설비(공용부 냉,난방설비, 영구배수 등)로 인한 제반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됨. •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음. •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사용검사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검사 전,후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 인허가관청에서 본 아파트단지의 건설사업에 관하여 실시한 각종 심의 및 인허가사항과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설계변경(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 포함)이 발생할 수 있음.
-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행하는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관리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음. • 개인 부주의로 옥외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음.
- • 입주 이후 단지 내 수경시설의 관리소홀로 인한 오염, 미생물 번식, 소음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해당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인허가 도서상의 오류, 설계사항의 개선, 심의/인허가조건의 이행,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분양 후 사업계획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음. • 본 건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재료의 수급여건, 현장시공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법규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써 주택법 등 관련법령 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 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 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됨.
-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
-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함. • 주택건설지역 인근 기반시설(도로, 녹지, 공원, 학교, 상/하수, 전기/난방, 저류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및 시세 하락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보증기관, 금융기관, 시공사, 관리사무소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 될 수 있음.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구분	항 목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의무 사항 이행 여부	고효율 기자재	적용	전동기, 펌프, 변압기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세대 내 대기전력차단스위치 및 콘센트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세대 내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 지하주차장 고효율기자재 및 동등성능 이상제품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부대시설 등의 공용화장실 내 재실감지센서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내 각실별 자동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절수형 설비 적용

▣ 홈네트워크 관련 시스템 설치 항목

구분	기준	설치항목 (1)	설치항목 (2)	비 고	구분	기준	설치항목 (1)	설치항목 (2)	비 고
항목	1	배선	침입감지기		항목	8	가스밸브 제어기	디지털도어록	
	2	예비배관	차량통제기			9	조명 제어기	현관도어카메라	
	3	브로킹필터 설치공간	전자경비 시스템			10	난방 제어기	예비전원장치	
	4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무인택배 시스템			11	현관방범 감지기	엘리베이터 호출 연동제어	
	5	통신배관실(TPS)	욕실폰			12	주동현관 통제기		
	6	단지서버실	주방TV			13	원격검침 전송장치		
	7	폐쇄회로TV장비	일괄소등제어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감 리 회 사	감 리 금 액 (원)	비 고
건 축	(주)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2,400,165,900	V.A.T 포함
전 기	(유)광진이엔지	775,925,856	
통신·소방	(주)한양기술단	558,80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01292018-101-0007600호	124,653,9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분양자(매도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02-6009-796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괴정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리로 52, 1층(괴정동)	603-82-09747	185071-0005645
시공회사	한신공영(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114-81-04605	110111-0075683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www.gj-thehue.com ▣ 견본주택 전화번호 : 051)977-8999 ▣ 견본주택 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340-1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51) 977-8999 | 시행 괴정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 한신공영(주)